

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아람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프로그램

좌장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목차

발제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 김아래미	4
발언 1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 장선희	11
발언 2	장애아동 돌봄의 한계와 대안은? / 강정배	17
발언 3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 돌봄 예산은? -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비교하며 / 옥경원	21
발언 4	바람직한 아동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 / 권영은	28
발언 5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 돌봄 예산은? - 아이돌봄 사업 소개 / 백영숙	34

발제문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김아래미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김아래미(서울여자대학교)

CHILD CARE



목차

1. 아동돌봄 예산 기준
2. 아동돌봄 예산 변화 추이
3. 아동돌봄 예산 제안

아동돌봄 예산 기준

- **돌봄아동연령:** 0~17세
- **예산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영아수당 등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기재부 복권기금: 입양아동 가족지원
- **분석기간:** 2020-2024년 (5개년)
 - 정책도입시기에 따라 영아수당은 2022~2024년을 분석
- **분석정책범위:**
 - 현금, 서비스 (구분 기준: OECD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 지역사회돌봄(시설보호는 제외,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포함)

아동돌봄 예산 변화 추이

- 아동돌봄 예산의 2020~2024년 사업별 예산: 연평균 증감률 6%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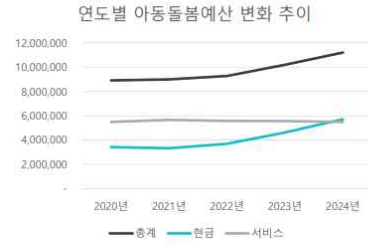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감액	연평균 증감률
총 계		8,915,130	8,995,738	9,272,743	10,191,177	11,210,574	573,861.00	6%
현금	연령 소 계	3,421,069	3,331,436	3,697,353	4,623,442	5,717,972	574,225.75	14%
	0-1세 영아수당지원	-	-	348,703	1,621,454	2,888,694	174,351.50	188%
	0-5세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42,855	760,779	482,907	175,854	108,075	-183,695.00	-40%
	0-1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17,424	18,338	27,000	38,288	44,272	6,712.00	26%
	0-17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54,412	306,669	421,275	495,900	535,595	70,295.75	20%
	0-17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4,100	5,895	6,323	5,205	3,303	-199.25	-5%
	0-7세 아동수당	2,283,374	2,219,455	2,379,318	2,256,398	2,111,471	-42,975.75	-2%
	0-17세 가정위탁 지원 및 운영	1,044	940	7,995	7,874	6,340	1,324.00	57%
	0-17세 입양아동 가족지원	17,860	19,360	23,832	22,469	20,222	590.50	3%
	소 계	5,494,061	5,664,302	5,575,390	5,567,735	5,492,602	-365	0
서비스	0-5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3,416,221	3,395,239	3,202,771	3,025,145	2,673,100	-185,780	-
	0-5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465,430	1,624,972	1,688,041	1,750,362	1,886,306	105,219.00	7%
	0-5세 보육사업관리	3,999	4,085	5,640	4,655	3,650	-87.25	-2%
	0-5세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17,021	18,183	19,290	23,615	21,729	1,177.00	6%
	0-5세 시간제보육 지원	16,600	21,570	20,882	20,413	25,005	2,101.25	11%
	0-5세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474	2,474	2,227	1,892	1,314	-290.00	-15%
	0-5세 어린이집 기능보강	19,777	6,866	3,859	3,473	7,640	-3,034	-
	0-5세 어린이집 확충	76,632	60,881	60,903	49,170	41,654	-8,745	-
	6-12세 지역아동센터 지원	183,019	211,619	196,804	228,919	251,787	17,192	0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23,698	43,702	48,782	57,649	57,664	8,492	0
	0-12세 아이돌봄지원	248,317	253,149	277,772	354,613	467,866	54,887	0
	0-12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873	21,562	48,419	47,829	54,887	8,504	0

- 장애아동돌봄예산에는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청소년방과후돌봄서비스 예산도 포함되나, 이용가능자료의 제약으로 표에서는 제외됨.

아동돌봄 예산 변화 추이

- 아동돌봄 예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현금과 서비스의 비중은 2020년에는 현금 38.4%, 서비스 61.6% 였으나 2024년에 현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금 비중이 51.0%로 서비스 비중 49.0%보다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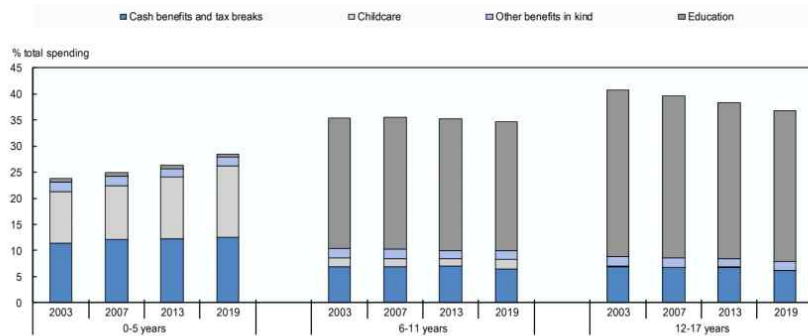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감액	연평균 증감률
총계	8,915,130	8,995,738	9,272,743	10,191,177	11,210,574	573,861.00	6%
현금	3,421,069	3,331,436	3,697,353	4,623,442	5,717,972	574,225.75	14%
서비스	5,494,061	5,664,302	5,575,390	5,567,735	5,492,602	- 364.75	0%



아동돌봄 예산 변화 추이

- [참고] OECD 아동연령대별 사회보장지출의 현금 및 서비스 비중

Chart PF1.6.A. Social expenditure per child increases with children age
 OECD average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and education (primary and secondary) by age, as a percentage of total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and education for children aged 0-17 years, 2003 to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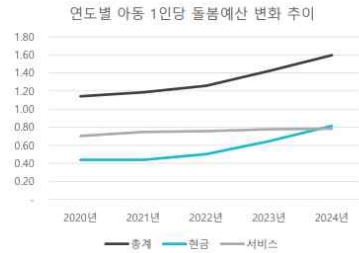


Note: The indicator is calculated using the Age-Spending Profiles methodology used in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http://www.oecd.org/els/soc/doingbetterforfamilies.htm>. Data is missing for Canada, Colombia and Costa Rica.
 Sourc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and OECD Education database

아동돌봄 예산 변화 추이

- 아동돌봄의 1인당 돌봄예산은 1.50백만원이며, 연평균 증감률은 9%임
- 현금의 연평균증감률은 17%이고, 서비스의 연평균 증감률은 3%로 현금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감액	연평균 증감률
총계	1.14	1.19	1.26	1.42	1.60	0.11	9%
현금	0.44	0.44	0.50	0.65	0.81	0.09	17%
서비스	0.70	0.75	0.76	0.78	0.78	0.02	3%



아동돌봄 예산 변화 추이

➤ 현금 예산 변화의 특징

-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사업의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2022년 영아수당을 신설하면서 감소된 현금지원 예산을 영아수당에 투입함
- 아동수당은 2022년에 연령은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 이후 연령과 범위의 유지되면서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예산감소만 이루어지고 있음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는 연평균 20%로 크게 확대됨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가정위탁 지원과 같은 소규모 예산도 확대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현금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가정 내 양육 책임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 확대되는 추세임

아동돌봄 예산 변화 추이

➤ 서비스 예산 변화의 특징

- 어린이집은 2023년부터 확충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교직원 인건비와 시간제보육은 각 연평균 7%, 11%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2023년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예산이 이전되면서 운영비 등이 증가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규돌봄시설로 전국 배치 계획에 따라 2020년~2023년까지 예산이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2023년과 유사한 예산을 유지함. 추가 확충 계획은 아직 없음
- 아이돌봄서비스는 202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윤석열정부 이후 공공의 시설 돌봄 서비스 확충보다는 가정내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맞벌이가구 증가, 가구규모 축소 등과 같은 가정내 돌봄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시설 돌봄서비스 확충이 요구되나, 아동돌봄서비스 예산은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음

아동돌봄 예산 변화 추이

➤ 총평

- 보건복지 예산 122조 중 아동돌봄 비중은 11조 수준이며, 다른 영역에 비해 예산 비중은 적은 편임
- 아동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확충에는 적극적이지 않고, 가정양육 중심의 현금 또는 서비스 지원을 강조하는 예산임
- 저소득아동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구, 장애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편임. 그러나 이전 지원금액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준에서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제도별로 세부 평가가 필요함
- 동일 연령 아동 현금지원이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어 전달체계의 복잡성이 높음
- 돌봄종사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정 수준, 미흡한 처우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음. 처우개선 예산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수준이며 사회복지계 단일임금체계 적용과 같은 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고 있어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예산 추계]

	2024	2029	2034
인구수	7,019,473	5,700,261	4,801,229
예산액	16,846,735	13,680,626	11,522,950

[참고] 현재 아동수당+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 5조 2천 5백억
현재 기초연금 예산 = 24조 4천억

아동돌봄 예산 제안: 현금

> 돌봄비용 지원 예산 확대

- 아동수당 연령 및 금액 확대
 - 이전 정부는 2027년까지 18세 미만까지 아동연령 확대를 약속한 바 있음
 - 지난 대선에서는 아동수당 20만원, 연령 확대 등이 공통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음
 - '아동'의 법적 정의에 따라 아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연령은 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수당도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 저연령아동에게 현금지원이 집중된다는 비판과 실제 욕구를 고려하여 영아수당을 없애고, 아동수당과 통합하는 것도 방안임
 - 가정양육수당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라는 정책목표와 상충되므로 이또한 아동수당으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돌봄지원의 충분성을 고려하여 특수욕구를 가진 가구의 예산 부족분을 채워야 할 것임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아동돌봄 예산 제안: 서비스

> 돌봄서비스 예산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확대
 - 2024년 어린이집 확충 예산 대폭 삭감(15.3%)됨
 - 공공보육이용률 50% 이상 달성(2022년 기준 이용률 25.3%)과 지역별 공공보육이용률 편차 완화를 위한 예산 확대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예산 편성
 -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건비 확충이 필요함
 - 0세반 1인당 3명 -> 2명
 - 3세반 1인당 15명 -> 10명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아동돌봄 예산 제안: 서비스

> 돌봄서비스 예산 확대

▪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확보

- 2024년 보육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전년 대비 2.5% 인상에 그침. 이는 물가인상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감소하였고, 인건비의 불충분성은 더욱 심화됨.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임금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며, 아이돌보미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불충분함
- 종사자 처우개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44번(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에 포함된 내용임으로 국정방향에 따라 처우개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함
- 어린이집 연장교사 지원 인원 확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임금 외에 일생활균형, 일자리 안정을 위한 노력도 요구됨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센터장 3,166천원 선생님 1,470천원	센터장 312만원 생활복지사 275만원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아동돌봄 예산 제안: 서비스

> 돌봄서비스 예산 확대

▪ 초등돌봄서비스 질 개선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 확대가 필요함

▪ 초등돌봄시설 확충 예산 확보

- 교육부가 2024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늘봄학교가 확충되지 않고 있고, 전체 돌봄을 늘봄이 감당하긴 어려움
- 지역사회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함. 3학년 이상 아동, 학교를 원하지 않는 보호자 및 아동, 야간 및 휴일돌봄,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학교늘봄운영이 어려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시설이 역할을 수행해볼 수 있음
- 이를 고려했을 때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1,126개를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예산추계] 1억2천 * 900개 = 1,080억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월 100만원	월 1,060~1,645천원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아동돌봄 예산 확보를 위한 과제

➤ 통합적 접근 필요

- 이미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예산을 더 분절화하지 않도록 통합적 접근에서 예산 확보
- 중앙부처 간, 사업 간 경계를 뛰어넘어 아동중심의 돌봄 예산 관리 중요
- 국비, 시비, 구비 등 지방과의 재정분담방안, 지방의 재정부담능력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이해관계 조정 중요

- 사업별로 이해관계자 갈등이 첨예한 경우들이 있고, 이는 예산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아동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

➤ 아동돌봄 수요-공급 격차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15



아동중심의 놀봄학교·지역아동센터 협력방안 모색

감사합니다



16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아동의 돌봄을 받을 권리

아동돌봄 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아동의 돌봄권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동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아동돌봄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지점은 어디인지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5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아동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믿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¹⁾ 아동이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것과 아동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 등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2021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지역 내 모든 아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통합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가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울산, 부산, 대구, 제주, 충남 등에서 비슷한 조례들이 제정되어 아동돌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김형모.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향후 과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러나 시민들의 인식에는 아직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공공이 책임지는 아동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신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왜 타인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그럴 거면 낳지 말지 그랬어.”, “우리 때는 부모님이 바쁘시면 아이들끼리 알아서 자랐는데 요새는 왜 그럼?”과 같은 댓글들이 달린다.²⁾ 양육을 여전히 가정의 몫으로 전제하고, 여성과 아동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간과하며 아동에 대한 돌봄을 국가적 책임의 영역으로 보지 않는 여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역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의 아동’이라는 개념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동돌봄 제도 이면에는 해당 사회의 아동돌봄에 대한 바람직성이 반영되어 있고, 제도와 사회·문화적 젠더 규범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성의 고용과 돌봄정책 이용의 패턴이 결정된다.³⁾ 현재 한국의 아동돌봄은 대부분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부모(주로 엄마) 대신 저숙련 저임금 여성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아동의 권리보다는 경제성장, 출산장려, 인적자원 활용 등을 위한 도구로 접근되며 (최근 교육부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도구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요구보다는 성인의 필요를 중심으로, 보편적 돌봄이 아니라 이용 자격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선별적 돌봄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돌봄교실 입소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춘 가정이라 하더라도 운이 나쁘면 선착순이나 추첨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한 구도적 접근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당도해있는 현실이다.

아동돌봄 예산의 결정 요인

질 높은 아동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집행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예산의 규모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쪽지예산’이라는 용어가 있다. 국회에서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36/0000049288?sid=102>

3) 백경훈. 2022.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정책: 덴마크 소셜 페다고지』. 한국사회정책 29(3), 243-274.

예산심의를 할 때 마지막 단계인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쪽지에 적어 건네는 것을 말한다.⁴⁾ 아동돌봄을 위해 쪽지예산이 동원되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아이들이 거대하고 강력한 정치력을 갖춰 자신들의 돌봄권을 보장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쪽지예산은 물론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행태이지만 어른들끼리 쪽지예산을 나눠 갖는 동안 아이들은 투표권도, 정치력도,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줄 정치적 세력도 없이 소외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기존 중앙정부 책임하에 있었던 사회복지분야 67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고 특히 아동복지의 경우 중앙정부사업 예산의 90% 이상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사회복지분권화는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아동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된 측면도 있으나,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많고 정치력이 없는 아동은 예산결정에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의 축소나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⁵⁾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중구의 초등학생 수는 ‘3천여 명’인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3천여 명’이다. 중구에서 자치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라면 어떤 정책 공약을 걸어야 할까? 아동의 요구에 맞춘, 아동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질 높은 돌봄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가는 정치생명을 잃기 십상이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지역 단체장은 기존의 현금성 노인 수당을 증액해 노인 1인당 10만 원이었던 지원액을 15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펼친 결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400표차의 신승을 거뒀다. 아이들을 위한 공약은 ‘민간주도형 돌봄 서비스 강화’였는데, 예상대로 당선되자마자 ‘아동돌봄의 민영화’를 발표한다. 그가 민영화를 주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초등돌봄교실에 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4) [정창수 칼럼] 기재부의 쪽지 예산 - 사회적경제뉴스 - <https://www.senews.kr/7454>

5) 이연주, 최영. 2016.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2):223-255.

돌봄예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구형 돌봄’이라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돌봄을 원하는 아동 전원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려고 시도한 공적 돌봄이었다. 관내 초등학교, 지방교육청, 구청 3자가 MOU를 맺고 학교에서는 공간과 행정적 업무를 제공하고 나머지 모든 사항(예산 포함)은 구청이 도맡는 형태였다. 당시 3자의 업무협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제3조(협력분야)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① 돌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관리책임 ②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③ 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④ 기존 돌봄전담사의 고용승계 및 정년보장 ⑤ 돌봄 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장과 사전 협의”, “제5조(비용부담) 학교시설을 활용한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설치·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중구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⁶⁾

모든 책임과 비용은 구청이 부담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세를 읽을 수 있다. 아동정책은 너무 많은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의 문제와 주인 없음의 문제를 함께 겪고 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청이라는 중층적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 역시 상존한다. 그런데 한 기관이 이렇게 변종처럼 나선 결과 하나의 사건이 생겨난 것이다.

구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4년간의 사업 예산 계획⁷⁾은 다음과 같았다.

6) 서울시 중구청.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서울봉래초등학교 간 학교시설을 활용한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업무협약(MOU)』 (2019.7.8.)

7) 서울시 중구청 생활복지친화국 교육아동청소년과. 『중구형 초등돌봄사업 기본계획』 (2019.6.21)

VI 예산 계획

■ 사업 유형별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3,301	4,356	6,977	9,892	12,076
학교 안 돌봄교실	19,565	2,039	4,390	5,763	7,373
학교 밖 돌봄센터	11,142	2,056	2,021	3,454	3,611
마을연계 틈새돌봄	2,594	261	566	675	1,092

■ 예산 성질별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3,301	4,356	6,977	9,892	12,076
시설조성비	5,449	2,307	1,328	822	992
인건비 및 운영비	27,852	2,049	5,649	9,070	11,084

2019년 당시 중구의 초등학생 수는 4,173명이었으니 학생 1인당 연간 비용을 계산해보면 1백만 원 남짓이다. 2019년 중구청의 세입 결산액은 5,900억원이었고 당시 계획대로 예산이 사용되었다면 2019년의 총 세입 대비 초등돌봄 예산액은 약 0.7%에 해당하며 2022년에는 세입 대비 2%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초등돌봄정책이 실제로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돌봄 예산을 책임지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동을 포함해서 정책 당사자 모두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시도했던 이 정책은 “양가 도움 없이 회사 다니는 워킹맘에게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구형 돌봄은 해당 지자체장의 재선 실패로 인해 중단이 검토된다. 공공이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게 해보겠다는 정치적 생명을 걸었던 단체장이 정치생명을 잃은 것이다.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이 이상한 실험은 그러나 뒤늦게라도 시민들에게 발견되었고, 정책 중단 검토에 분노한 양육자들이 나서면서 지금까지 간신히 버텨오고 있다.

중구의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009억 원이 발생해 전년 709억 원 대비 42.3%이 증가했다. 세출 집행률은 79.1%로 80%에도 미치지 못해 중구의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⁸⁾ 과도한 잉여금과 턱없이 낮은 집행률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의 추진은 예산에 앞서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공적 돌봄이 우연한 변종으로 인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아동의 돌봄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아동정책 운영의 분절적이고 중층적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대한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2022회계연도_결산검사의견서』 (2023.6.)

장애아동 돌봄의 한계와 대안은?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무연고 장애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커갈 방안은?”

**“30대 엄마가 2살 자폐증 아들 살해 뒤 극단적 선택(연합뉴스, 2022)” 의
예방은?**

장애아동은 특별한 요구와 민감한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며, 돌봄 측면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교육,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극한의 돌봄상황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상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가는 문화와 환경이 되지 않으면, 가족에게만 맡겨진 양육과 돌봄은 지금의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특히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은 적극적인 정부와 지역사회의 개입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아동 돌봄은 지원 대상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숙련 돌봄인력 부족 등 장애아동 가족은 다음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① 지원 대상의 제한

장애아동 돌봄 지원사업인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전국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의 가정은 무료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8,005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정이나 경제선에 있는 가정들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이 있습니다.

②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전국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지방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접근성은 장애아동 가족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며, 지역 간 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③ 숙련 돌봄자 부족

장애아동 돌봄 분야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낮은 임금, 높은 업무 강도, 불안한 직업적 한정성으로 인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새로운 인력의 유입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④ 서비스의 중복성 및 비연계성

현재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는 여러 기관과 프로그램에 걸쳐 제공되고 있지만,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며, 장애아동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⑤ 6세 미만 장애아동 서비스 제외

많은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6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6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동의 초기 발달에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⑥ 심리적, 경제적 부담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정신 건강을 해치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의 해체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⑦ 교육 및 치료 부담

장애아동의 교육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은 부모에게 모든 것이 맡겨집니다. 이는 부모에게 큰 재정적 및 시간적 부담을 주며, 종종 가족 내 다른 필요사항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⑧ 사회적 인식과 고립

장애아동을 둔 가족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적정 인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를 제한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자원을 이용하는 데도 제약이 됩니다.

⑨ 서비스 대상과 제공 시간 부족

많은 장애아동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는 실제로 대상자 선정과 제공 시간 측면에서 매우 부족합니다. 이는 특히 중증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되며, 이들 가족들의 일상생활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가장 먼저, 모든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워간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and 필요한 양육과 돌봄의 지원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아동 또는 발달이 지연된 아동은 정보제공을 포함한 전담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수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할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 연령, 이용 시간의 제한 없이 누구나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아동(발달지연 포함) 돌봄, 양육 서비스 필요 (단, 서비스 필요성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

② 시·도 단위의 지원센터 구조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장애아동 및 발달지연 아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

③ 돌봄 인력 지원을 서울시의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장애아동 지원에 따른 전문성 보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④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고, 필요 서비스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장애아동 통합 서비스 제공 지원체계 마련 필요

⑤ 12세 이하 장애아동(발달지연)의 초기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기 개입 서비스는 건강보험 중심의 집중지원과 보장성이 강화 되도록 지원체계 마련 필요

⑥ 장애아동의 가족을 위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부모 교육, 상담 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여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 필요

장애아동 돌봄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늘의 집담회를 통해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 정부와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넘어 '사회가 키우는 아이'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아이가 국가의 미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아동은 각자의 독특한 잠재력을 가진 귀중한 인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우리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 돌봄 예산은?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비교하며-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아동 돌봄의 세 가지 요건

아동의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봄환경(hardware)과 돌봄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User), 그리고 돌봄 프로그램(Software)의 세 가지 구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 **양질의 돌봄 환경**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학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며 편안함과 친근함, 충분한 자극과 학습의 기회,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물리적, 사회적, 정서적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 둘째, **돌봄서비스 제공자**는 돌봄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는 전문가 또는 기관으로 아동의 양육과 교육, 놀이, 식사 및 일상생활 지원, 보호자의 부재 시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가다. 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전문성과 지식,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 적절한 처우와 인력확보 등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불안정한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 자격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 셋째, **돌봄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 단계와 개별 특성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창의성, 상상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성 등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면 아동이 범죄나 비행에 참여할 빈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만족감도 높아져 돌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일과 삶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돌봄 환경

정부는 늘봄학교를 '24년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57개교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 늘봄학교는 독일의 전일제학교를 기반으로 한다. 전일제학교는 대부분 오전 수업 후, 점심 제공과 오후에는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활동(예술, 음악, 체육, 언어, 과학 등)을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동일한 방과후학교를 시행하고 있었다.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해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는 개편됐다. 사교육 대처에 대한 측면이 강하고 돌봄 요인보다는 교육 요인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사교육에 밀린 부모들의 교과 위주 학습 요구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강남, 서초의 돌봄 이용률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전국 2,741개교 중 단, 1개 교(세명초)만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음.) 사교육의 대안이 되겠다고 정부가 선언했지만,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확대된 오전 7시 돌봄과 저녁 8시까지의 저녁 돌봄은 교육적 요인보다 돌봄 요인이 강하다. 사교육의 대척점에 있는 공교육을 배제하고 방과 후 돌봄에서 사교육 대처에 대한 이슈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 늘봄학교는 학교라는 공공의 환경에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방과 후 이동으로부터 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돌봄 교실 수와 돌봄 이용 아동수의 불균형(Mismatch)이나 장시간 학교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측면들 또한 존재한다.

- 지역아동센터는 마을에서 자생한 지역사회 모델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되었다. 경제 위기,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방임 등

의 사회적 문제로 위험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법제화를 통해 보호, 문화, 교육, 정서, 지역사회 연계라는 서비스 영역을 정착시
켜 20년 동안 지역의 아동 돌봄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민간의 자발적인 출발은
법제화와 5차에 걸친 주기적인 평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인화 시행 등으로 많
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민간 운영 시설이라는 한계는 여전하다. 돌봄 환경의 개선
을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은 했지만, 현재는 중단 상태다. (26억→0 순감,
사업종료) 또한 저녁 8시까지 돌봄은 운영시간을 뒤로 한 시간을 미루는 방식으
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4억 원(순증)과 비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없다.

- 지역아동센터는 대상 아동을 우선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무료 이용
을 원칙으로 한다. 전·월세 시설 51.1%로 평균 개인 부담 전세보증금은 평균 7
천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정부 중심의 다함께돌봄센터는 500세대 이
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설치로 인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이
아니다. 돌봄서비스를 공공재 서비스로 보기보다 공공이 아니면 일단 배제된다.
여전히 다함께돌봄센터는 상시 이용이 아닌 보편적, 수시 이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용 대상 아동(선별)은 민간에서 돌보게 하고 일반 아동은 정부
에서 돌보는 역전 구도가 만들어졌다. 지역아동센터는 많은 수가 개인이 임대료
를 지불하며 운영하고 있다. 최근, 복권기금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오랜 임대건물의
석면을 철거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때에 따라, 임대 건물주에 유익을 주고
쫓겨나가거나 이전 등으로 결국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되기도 한다. 이럴 바에야 지
역아동센터 지침대로 지방정부 유휴공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방하거나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제대로 지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석면 철거사업에 소모성 예산이
약 35억 원이 소요된다면 소모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씩 70개 소를 매년
지원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자

- 늘봄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라는 전담 조직이 신설됐다. 전담 행정인력이 배치
되어 '25년에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부담을 해소하고자 설치했는데 규모가 큰 학

교는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발령하고 작은 학교는 교감이 담당한다. 늘봄실무직원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공무원, 공무원, 단기계약직, 퇴직 교원으로 채용·배치한다. 특히, '24년 1학기의 교사가 담당하던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 업무는 2학기에 늘봄실무직원에게 모두 이관, '25년에는 교사가 완전히 늘봄학교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즉, 학교 돌봄의 서비스 제공자는 지방공무원(또는 교감)으로 구성된 늘봄지원실장과 공무원이나 공무원, 퇴직 교원으로 구성된 실무자들이 돌봄 행정을 담당하며 늘봄전담사(전 돌봄전담사)나 프로그램 강사가 실제 돌봄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교육부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추진과 2시간 돌봄 무료 지원 등 1조 1,657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밖 돌봄서비스 연계는 자유수강권 바우처 사업을 제시하지만,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는 승인 아동만 이용할 수 있고 대학, 기업 등 서비스 공급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나 자질과 안목, 그리고 혁신적인 변화가 엿보이지는 않는다. 단지, 교사들의 행정부담 회피 조건이 우선되고 사교육에 있는 아이를 늘봄학교에 모으기 위해 조급하게 만든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 1>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비교

구분	늘봄학교 (교육부)	지역아동센터 (복지부)
규모	2,741개 교 이상 ('24. 03) 2학기부터 6,157개 교 계획 이용 아동 수 : 130,000명 ('24.4.29)	4,219개소 ('24. 03) '22년 대비 34개 소 축소 이용 아동 수 : 105,210명('22.12)
예산	특교 : 2,469억 원 보통 : 9,188억 원 총 1조1,657억 원 지원 * 늘봄실무직원(기간제교원 포함), 늘봄전담사(기존 돌봄전담사) 등 인건비 별도 지원(보통교부금에 포함)	인건비 +282억 원 운영비 +5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 -58억 원 (환경개선비 -26억 원, 사업종료) (아동복지교사 지원 -32억 원) 총 2,178억 원 지원

반면, '24년도 7월, 지역아동센터는 25인 이상 시설부터 종사자 1인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전체 센터에 확대 예정인데, 법제화 21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에 해당하는 '25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예산

- 시설장:

서울(456명×3,120,000×12개월×30%)+세종시(13명×3,120,000×12개월×40%)+제주시(65명×3,120,000×12개월×20%)+그 외 지역(3,696×3,120,000×12개월×50%)=74,824백만 원

- 생활복지사:

서울(662명×2,750,000×12개월×30%)+세종시(19명×3,120,000×12개월×40%)+제주시(81명×3,120,000×12개월×20%)+그 외 지역(3,696×3,120,000×12개월×50%)=68,323백만 원

- 생활복지사 1인 추가지원:

서울(456명×2,750,000×12개월×30%)+세종시(13명×2,750,000×12개월×40%)+제주시(65명×2,750,000×12개월×20%)+그 외 지역(3,687명×2,750,000×12개월×50%)=65,951백만 원

총인건비 : 2,091억 원으로 '24년 1,820억 대비 27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돌봄 프로그램

교육부는 희망하는 초1 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제공하고 희망하지 않을 때 돌봄서비스(늘봄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프로그램 강사로 시간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확보된 인력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 우수 공급처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단체 등과 연계,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사회 연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제한된 지역자원에 따른 돌봄서비스 간 경쟁도 불가피하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예산

-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내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24년도 운영비는 총 358억 원으로 '24년도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다. 프로그램비는 정원에 따라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월평균 프로그램비는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이상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20~29인 이하 동 지역의 경우 월 158만 원의 운영비 중 52만 원 이상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 평균 정원 25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990원의 프로그램 단가를 보여준다. 30인 이상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더 낮아져 평균 34인 일 경우 728원의 프로그램 단가를 보여준다. 즉 인원이 증가할수록 프로그램 단가는 더 낮아진다.

반면에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시간당 1만 원씩, 월 40시간 정도의 편익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 후 프로그램은 2만~4만 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하루 23,809원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해도 그 차이는 더 극명하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의 현실화는 늘봄학교의 확대 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늘봄학교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사실상 중앙정부 단위에서 구조화하여 지방정부와 마을 돌봄의 질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990원(/일)의 프로그램 단가는 최소 2천 원 수준(월 1,000천 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대다수 민간 후원에 의존적인 구도에서 돌봄 기관의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도시 유형, 시설별로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30인 이상의 농·산·어촌에 소재한 시설의 경우 강사의 접근성이나 인프라의 부족까지 겹쳐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마을 돌봄과의 통합

- 지방정부와 늘봄학교의 재정 지원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고 시스템마저 분절되어 이용자나 공급자도 불편을 겪고 있다. 유독 늘봄학교에 집중돼있는 돌봄 정책은 지역아동센터에는 출발선이 다른 경쟁적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협조 요청은 마을 돌봄 현장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일부 지방에서는 잘 있던 아이를 늘봄에 빼앗기고 있다는 자조 섞인 표현도 적지 않다. 학교 내로 센터가 들어가 운영(정규시간 내 교장과 방과 후 교장 형태 등)한다거나 마을이 운영하는 모델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 결국 한 아이, 곧 수요자를 위한 한 마을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나 마을이 함께 응답해야만 한다.

바람직한 아동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

권영은 /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 세이의 법칙

최근 돌봄학교 시범학교나 양질의 교육,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지자체, 농어촌 유학에서의 경우일까요. 폐교한 학교가 돌봄센터가 되고, 지리산의 한 학교에서 승마를 타기도 하니, 산촌 유학이 이어집니다.

개그에서 '수요 없는 공급'이라며 현재는 아무도 찾지 않지만, 공급자들이 창의적인 발상들을 곧잘 해냅니다. 즐기는 수요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돌봄교실 뽑기에 가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학교는 수요를 예상은커녕, 예상할 필요 없이 한정된 돌봄교실을 계획해두었습니다. 2024년 새 학기가 되기 전, 윤석열 정부가 돌봄학교를 하겠다. 선언하자 학교는 갑자기 공급을 늘려야 했고, 공간이 있는 학교는 이미 있던 돌봄교실, 방과후교실에 돌봄교실, 틈새돌봄교실까지 더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곳은 교실을 병행해 쓰고, 아이들은 교실을 찾아 헤매고 혼란을 겪습니다. 제 아이 학교만 한정해보면 이제 46명의 학생 중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은 30명 이상으로 기존 9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돌봄교실 선생님, 교실 운영, 틈새돌봄 선생님 등 위탁운영으로 학교 안에 예산은 추가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수요를 막기도 하고, 공급을 안 하기도 합니다.)

예산, 수요, 공급에서만이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늘봄학교 추진방안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봄학교가 우선 무엇인지, 기존의 돌봄교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양육자들의 이해는 부족한데 추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육자와 종사자의 이해와 요구를 조율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조차 이해하고 개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동을 위한다면서 아동들은 이름만 다른 반을 왜 옮기는지 모릅니다.

초등 돌봄의 세 주체인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 보장이나 예산이 어디에서 끌어왔는지, 제대로 된 정책과 방향성에서 이뤄지는지, 준비 시간과 집행자의 의지와 능력 등이 담보되었는지 평가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로서는 2월 참여연대에서 진행한 <초등돌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에서의 발언과 고민을 다시 되짚어봅니다.

2월 참여연대에서 진행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에서 박민아 활동가는 △ 아동권리적 측면에서 충분한 쉼과 놀이가 함께하는 돌봄이 필요하고, 학교 공간이 아동친화적으로 바뀌고 아동의 놀 권리와 쉼 권리를 누릴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누구세요?" "교실 아니야" '늘봄학교' 현장 돌아보니..

https://youtu.be/vXbyf1V_Cwo?si=WqLawBA2b2A2Fm2X

△ 차별없는 보편적 돌봄권과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교실 2 돌봄전담사'와 같은 인력배치, 안전한 공간, 적정 아동비율, 건강한 급식 등이 필요하고 초등 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초등돌봄 폐지법? 이거 실화임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404121600041

△ 초등돌봄체계에서 돌봄노동이 적정하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양질의 학교 돌봄이 가능하지 않음을 공감하고,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발의 등으로 볼 때 돌봄 공공성 후퇴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6>

△ 예산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돌봄 노동자, 교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동 시간 단축과 함께 늘봄학교가 추진되어야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다지고 사교육 시장에 맡겨진 교육이 학교 안으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초1·2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제 쓰면 연 60만원 '늘봄바우처' 지급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2815450004919>

정치하는엄마들에서 바란 초등 돌봄 안이 현재는 2-30%될까요. 바람직한 돌봄 정책과 예산 방향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예산 배치와 공급

이미 이해하고 계신 바대로 다양한 돌봄사업에서 예산과 의지, 능력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도, 효과도 각각입니다. 시기마다 차이도 있고.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각기 다르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선택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각기 다른 이름과 내용부터 수요자에게는 복잡한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선별의 기획 노동을 할 여력이 없다면 돌봄의 차별과 돌봄 공백은 아이들에게 그 영향을 고스란히 미치니까요. 수요자가 원하는 예산 배치와 공급을 해야 합니다.

<표 1> 부처별 주요 돌봄사업 결산 현황(2022)

[부처별 주요 돌봄사업 결산 현황(2022)]

(단위: 백만원, %)

부처	재원	사업명	2022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저출산예산 포함여부
복지부	일반회계	다함께 돌봄사업	48,782	46,628	38,224	82.0	○
복지부	일반회계	지역아동센터 지원	196,804	196,944	196,824	99.9	○
교육부	교육재정보통교부금	초등돌봄교실	222,354	222,354	217,105	97.6	×
여가부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29,440	29,440	27,910	94.8	○
여가부	일반회계	아이돌봄 지원	277,772	279,551	279,524	100.0	○

자료: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 정부 부처별 초등돌봄 운영현황

[정부 부처별 초등돌봄 운영현황]

사업구분	부처	운영현황	인원	(비율)	주요 지원내용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6,178개 학교, 14,970개 교실	292,068명	(65.5%)	초등학교 유휴교실 이용 돌봄서비스 제공, 급간식 지원 등
(2023.3~ 늘봄학교시범운영)		5개 교육청 214개 학교	초1에듀케어 1,577명 이용중	(0.4%)	초1에듀케어, 맞춤형(아침뜸새오 후-저녁) 돌봄, 양질의 프로그램, 급간식 지원 등
학교돌봄터	보건복지부	70실	1,521명	(0.3%)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및 급간식 지원 등
다함께돌봄센터		881개소	21,984명	(4.9%)	
지역아동센터		4,254개소	121,651명 (전체 정원)	(27.3%)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급간식 지원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	342개소	6,908명 (초등정원)	(1.5%)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상담, 급간식 지원 등
계	-	-	445,709명 ¹⁾	(100%)	-

주: 늘봄학교는 2023.4월말 기준, 그 외는 '22.12월 공급정원 기준이며,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의 일부로 '25 전국 확산 예정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중고생을 포함한 수치임

출처 : <https://brunch.co.kr/@adler2017/35> 초등돌봄 사업의 문제점 : 조사하면 다나온다

예산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잘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의 경우 예산은 있어도, 의지와 능력 중 하나의 부재로 불용액이 큰 예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도서관,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특성화 교실 누군가에게는 성과로 따온 예산이 교과과정에 집중하고 싶은 교사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의 식당이, 운동장이 도서관이 남다르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능력과 의지가 예산과 합을 이뤄낸 경우일 것입니다.

<표 3> 2022회계연도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결산 현황

[2022회계연도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예산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21,000	21,000	21,000	8,640	41.1	-	12,360	-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교육부

바람직한 이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

- 돌봄은 아동권리중심으로, 아동인권 존중이 바탕 되어야 합니다.
- 다양한 양육자의 상황에 맞춤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책, 예산, 집행 총괄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다음 해 예산을 최대한 예상하고, 예산집행을 유동적으로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 중복되는 예산,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합니다.
- 집행하는 이들의 의지와 능력을 고양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 돌봄센터마다 다른 운영방식, 처우, 프로그램 중 상향의 기준을 서로 배우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돌봄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 공급 중심의 정보 제공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보 수집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 수요자가 적극 제안할 수 있는 예산 배치와 집행자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모니터링이 진행해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과 관련 있는 아동, 청소년복지 분야는 초등 돌봄 외에도 관심이 큽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아동안전 전문교육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 다함께돌봄사업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이 증가하는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성이 담보되는 방향인지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 돌봄 예산은?

- 아이돌봄 사업 소개 -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영유아 및 아동돌봄서비스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아이돌보미 현황

2022년 기준으로 총 78,212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가구별 월평균 96.3시간 이용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26,675명임. 김한규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중 입사자는 3,479명이었고, 21년 전체 퇴사자가 2,876명으로, 결국 입사자 수의 80% 이상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이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의 수가 중요한데, 처우 등이 부실하여 양성을 해도 퇴사자가 많아 정부 계획만큼 확대되지 않고, 대기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24년 아이돌봄 예산

- 2023년 예산 : 354,613백만 원

- 2024년 예산 : 467,866백만 원
- 2023년 대비 총 113,253백만 원(32%)가 증가함

아이돌봄 이용자 부담금

① 아이돌봄 사업에 있어서 다른 돌봄과 가장 큰 상이성은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점임.

② 국가 보육/돌봄 사업인 산전산후 돌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늘봄학교, 방과 후 돌봄 등 이용 대상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국가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유독 아이돌봄 사업만큼은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아동들이 본인의 집에서 편안한 돌봄을 받는 만족도 90% 이상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부모들이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부득이하게 무상인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③ 이용 시간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함. 연간 960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일 평균 4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용 시간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100%로 올라가, 저소득층의 경우 이용 부담이 크게 있음.

아이돌봄 이용자들은 9~10월경 아이돌봄 이용 시간을 다 사용한 경우가 많아, 이 시기에 많은 아이돌보미들은 실업 상태가 됨.

<표 1>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	15,110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초등돌봄 8-12세) 가형의 경우(월 80시간 이용 기준) 232,560원, 두 자녀의 경우 348,8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표 2> 유형별 월 부담금

(단위: 원)

유형	1자녀	2자녀
가형	232,560	348,840
나형	651,280	976,920원
다형	790,800	1,186,200
라형	930,400	1,395,600

*월 80시간 이용 기준

④ 아이돌봄에서 본인부담금을 영유아와 초등돌봄을 차별하는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초등돌봄의 경우 아이돌봄 외에 다른 돌봄을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차이를 두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지는 않음.

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나형의 경우, 한 자녀를 아이돌봄을 이용할 경우, 소득기준으로 볼 때 가정소득의 13%, 두 자녀 아이돌봄을 이용할 경우 20.7%가 아이돌봄 이용 비용으로 지출됨을 알 수 있음. 이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임.

초등돌봄에서 아이돌봄의 필요성

① 초등 저학년의 경우, 아동이 등교할 때 함께 해줄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늘봄교실을 일찍 열어 아침 일찍 등교할 수 있지만, 이는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무리할 수 있으며, 다른 친구들이 늦게 등교하는데 혼자 일찍 등교할 경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음.

아침에 부모의 출근에 맞추지 않고, 아이의 생체리듬에 맞추어 일어나고, 씻고, 아침식사를 하고 아이돌보미와 함께 등교하는 것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음.

② 아동이 8시 30분에 등교하는 경우, 오후 4시 30분이 되면, 이미 학교에서 8시간을 있게 됨. 성인의 경우에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쌓이지 않게, 하루 8시간 근무를 권장하는데, 아동의 경우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을 학교에 있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임.

늘봄학교나 방과 후 돌봄을 하더라도,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씻고, 저녁 식사를 하거나 놀이를 하는 것이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유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연장 보육을 하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음. 모두가 퇴원하는데, 한두 아이만 남아, 부모가 오길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다시는 연장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③ 돌봄에 있어서 대상자의 만족도나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돌봄이 우선이라고 봄. 늘봄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라는 인프라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경제성을 중심으로 아동돌봄을 설계한 것이라는 점임. 여기에는 아동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음. (신체적, 정서적인 면)

학교에 아동을 10~12시간 머물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거나, 아동에게 유익하게 보이지 않음에도 돌봄교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돌봄 공백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만을 강조하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봄.

④ 위에서 보았듯이 아이돌봄의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부모들이 아동을 생각하면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타 아동돌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아이돌봄의 무상정책으로의 전환

① 아이돌봄 이용자 부담금 경감 정책이 시행되어야, 아이돌봄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음.

- 2023년 저출생 고령화 대책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아이돌봄 이용자를 현재의 8만 5천 가구에서 23만 가구로 확대 발표함. 이에 따라, 2023년 8만 5천 가구에서 2024년 11만 가구로 아이돌봄 이용자 확대 정책 및 예산 편성함.

- 그러나 이용자 부담금 경감 대책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나타나고 있음.

② 전국 지자체 중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자체가 늘고 있음.

<표 3> 지자체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지자체	지원내용
강원 원주시	가,나,다형 본인부담금 50%, 라형 본인부담금 20% 지원
경남 창원시	본인부담금 40% 지원
경남 남해군	첫째, 둘째 본인부담금 50%지원, 셋째 100%지원
경남 밀양시	첫째, 둘째 본인부담금 50%지원, 셋째 100% 지원
경남 합천군	본인부담금 15-100% 지원
경북 경주시	본인부담금 지원위해 예산 3억 편성
경북	본인부담금 90% 지원
경북포항시	가형 100%, 나머지 50% 지원
전북 부안군	본인부담금 50% 지원
전북 익산시	첫째 70%, 둘째 100% 지원
전남 장흥군	가형 100%, 나형 60%, 다형 50%, 라형 40%지원
전남 곡성군	40-100% 지원 예산 1억3천5백만원
전남 무안군	본인부담금 40%지원
전남 화순군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70-90% 지원
전남 고흥군	본인부담금 40-100%지원
전남 진도군	본인부담금 40-100%지원
충남	본인부담금 50%지원
충남 계룡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충남 논산시	본인부담금 50%지원
경기 가평군	일반가정 50%, 다문화가정 100%지원
충북 옥천군	본인부담금 50% 지원
서울 강남구	예산 78억 편성 본인부담금 70-100% 지원

③ 이용자 부담금 경감 정책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임.

- 더불어민주당: 소득기준 철폐, 이용자 부담금 80% 보조
- 국민의힘: 소득기준 철폐

* 이용자 부담금 지원 필요 예산

- 2024년 11만 가구 예상

- 각 가정당 1년 4,800,000원 지원(시간당 각 가정 평균 지원비 5,000원, 연 960시간 이용)
- 소요예산은 5,280억 원
- 아이돌봄 예산은 7(정부) : 1.5(광역) : 1.5(기초) 이므로 정부 부담은 3,690억여 원
- 기존의 아이돌봄 예산과 합치면 아이돌봄 총예산은 약 8,300억여 원임.

④ 아이돌봄 지원의 유형별 차등 지원, 수년간에 걸쳐 지원액 상향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방향을 세울 경우, 예산은 이보다 적게 들 수 있음.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① 아이돌보미 노동실태

2022년 3월 실시한 민주노총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및 법제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의 약 40%가 하루 4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답자의 38.5%(191명)가 '100만 원~15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며, 26.2%는 '1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② 아이돌보미 임금과 처우의 문제점

- 정해져 있지 않은 근무시간

아이돌보미들의 대부분은 이용자의 신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가 있어야만 근무하는 특성이 있어,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그래서 전체 아이돌보미의 30% 정도가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저임금의 원인이 됨.

노동조합은 월 60시간 이상의 기본 근무 시간 보장 등 안정적 근무 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이는 아이돌보미의 타 직종으로의 이탈을 낳고 있으며, 매년 양성교육비로 낭비되는 재정 또한 늘고 있음.

- 교통비 문제

정부 차원의 교통비 지원은 섬과 벽지, 또는 읍, 면 지역에만 해당하고, 거리 기준 역시 3km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실질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원인이 됨.

아이돌보미 일의 특성상 오전 7~9시, 오후 4시 이후 2시간씩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 최저임금을 받고, 하루에 4차례 이상 교통비가 들어,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음.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곳이 도심 지역일 수밖에 없어, 정부 지급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동시간과 교통비 문제가 겹쳐 아이돌보미들은 조금 먼 지역은 기피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기 가정이 늘 수밖에 없어, 이는 서비스 이용가정의 불만이 되기도 함.

- 부실한 복리후생

정부의 임금 지급기준에 명절상여금을 제외하고, 별도의 경력 또는 근속을 인정하는 체계가 없어, 1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시급이 같음.

평균근로기간이 6~7년이고, 10년 이상의 경력자도 많은데,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임금체계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아이돌보미가 많음.

게다가, 가정을 방문하는 노동 형태상,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게 되어 있어, 실질 임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5시간 이상 및 종일제 영유아 돌봄의 경우 식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③ 아이돌봄의 처우가 중요한 이유

2024년 아이돌봄 예산은 약 4,600억 원, 전년 대비 30% 증액함.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대상 가정을 8만 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함.

그러나, 아이돌보미의 확대 없이는 이용가정을 확대하기가 어려움. 아이돌보미를 매년 3천명씩 양성해도 낮은 임금과 처우로 인해, 양성 인원의 80%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아이돌봄 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봄.

고령화시대에 아이돌봄 일자리는, 처음의 설계 당시처럼, 더 이상 경력단절 유희 여성이나, 어르신 일자리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일자리로 변화하였음.

그럼에도, 적은 근로시간, 낮은 임금, 낮은 처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아이돌봄 이용가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고 봄.

합계출산율 0.7이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아이돌봄의 국가책임 확대, 공공성 확대는 너무나도 당연히 가야할 길임. 더 이상 가정의 돌봄이 가능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아이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처우를 높이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 조건임.

④ 처우개선 예산

- 교통비

종사자 26,000명 * 1일 교통비 3,000원 * 20일 * 12개월 = 187억 원

- 근속수당

평균근속 5년 26,000명 * 월 7만 원 * 12개월 = 218억 원

결론

아이돌봄서비스는 출생율 0.7이 안되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95%에 이르는 이용자 친화적인 정책임.

그러함에도, 아이돌봄은 처음 시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책적 변화가 거의 없음.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 변화를 통해 아이돌봄의 활성화 및 확대, 이용자 친화적인 정책으로, 변화해야 함에도, 시대적 변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제도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제 확대임. 아이돌봄서비스 제도를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시대적 목표인 출생률 확대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국가의 미래인 아동들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놓는 것으로 폐기해야 함.

무상아이돌봄은 각 당의 정책공약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출생대책 예산에 비추어, 예산 대비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임. 아동돌봄 정책을 학교라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매몰되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아동의 인권과 가정에서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 돌봄 예산은?

발행일 2024. 05. 02.

발행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 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abtax@pspd.org